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법·같은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및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중 "수용가"를 각각 "사용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00
----------	-----

2000년 11월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회부일자 : 2000년 9월 21일 회부

다.상정일자

- 제1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년 10월 5일 상정, 보류)
-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년 11월 6일 상정,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환경관리실장 김승규)

가.제안이유

도심지 및 관광지역의 화장실을 개방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주요골자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조건을 정함(안 제3조)

- 1)대상 : 도심지 및 관광지역(인사동·이태원거리, 남대문·동대문시장, 신촌 등)에 위치한 다중이용화장실로서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

※다중이용화장실 : 주유소, 음식점, 대형빌딩, 터미널, 극장, 예식장, 시장, 상가 등 다중이 모이는 건물에 부속된 화장실

2)조건

- 자정까지 또는 24시간 화장실의 개방
- 안내표지판, 안내유도 사인의 설치 및 부착의 허용

▣보조범위·방법 및 기간을 정함(안 제4조)

- 1)범위 : 소모품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파손에 의한 수리경비

2)방법

-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가액 산출을 근거로 매월 지급
- 파손에 의한 수리경비는 현장을 실사하여 산정 지급

- 3)기간 :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월의 말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참고사항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급의 지출을 할 수 없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등) ①(생략)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예산조치 : 2001년 예산반영

■ 기 타

- 1) 입법예고(2000.9. 5~9.15)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중요 규제사무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동수)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방하는 민간시설인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하여 소모품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의 일정부분을 서울시가 보조하여 증으로써 적극적인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2002년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 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구 건축법시행령 제95조제5항을 보면, 연면적 5,000㎡이상의 건물은 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나 규제개혁차원에서 '99. 4. 30 폐지되어 이후, 공공기관 및 공중 화장실 이외에는 아무런 보안책이 없는 상태로 동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보조금 교부대상에 대한 소모품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경비산정 및 지급범위, 방법, 기간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검토중에 있는 개방 가능한 다중이용 화장실 127개소 대상을 보면, 공공시설 48개소(공중화장실 10개소, 동사무소 2개소, 소방서 4개소, 파출소 17개소, 지하철역 13개소, 관광안내센터 1개소, 세종문화회관 1개소), 민간시설 66개소(음식점 9개소, 업무용빌딩 12개소, 주차장 1개소, 상가 2개소, 주유소 2개소, 미술관 1개소, 패스트푸드 39개소), 호텔 13개소로 다중이용화장실 설치분포가 도심권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그 숫자 또한 필요 이상의 숫자는 아닌지 미지수이고, 이에 따라 도심지(종로 28개소, 대학로 9개소, 명동·소공동 26개소, 북창동 5개소, 무교동 7개소) 및 관광지역(인사동 9개소, 이태원거리 17개소, 남대문·광화문 13개소, 신촌 15개소) 이외에도 서울전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구밀집과 유동인구가 많은 특정지역에도 다중이용화장실 설치의 광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짐.

○ 마지막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설치기간은 2001. 1. 1부터 2002년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동조례 폐지이후 갑자기 사용불가능한 다중이용화장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는 향후 계획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겠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기존법령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된 화장실에 대한 불편사항을 정부(건교부)에 건의하여 과거보다 더욱 실효성이 있는 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서울시의 주요지역의 가로나 빈공간을 적극 활용 보다 더 많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내·외국인에게 거리와 시간대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화장실 문화국이 될 수 있도록

<p>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생략</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전원일치)</p> <p>7.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 따른보조금지급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도심지, 관광지역 등에서 자정까지 또는 24시간 개방하는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다중이용화장실"이라 함은 주유소, 음식점, 대형빌딩, 터미널, 극장, 음식점, 시장, 상가 등 다중이 모이는 건물에 부속된 화장실을 말한다.</p> <p>2. "보조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에 공익상, 시의 정책상 필요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및 조건) ①도심지 및 관광지역(인사동·이태원거리, 남대문·동대문시장, 신촌 등)에 위치한 다중이용화장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보조금 교부조건은 다음과 같다.</p> <p>1. 자정까지 또는 24시간 화장실의 개방</p> <p>2. 안내표지판, 안내유도 사인의 설치 및 부착의 허용</p> <p>제4조(교부범위 및 방법, 기간) ①보조금의 교부범위는 화장실에서 사용된 소모품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개방으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의 수리경비를 포함한다.</p> <p>②보조금의 교부방법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가액산출을 근거로 매월 교부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규정한 수리경비는 현장을 실사하여 산정된 가액에 한하여 지급한다.</p> <p>④보조금의 교부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p> <p>제5조(의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1.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p> <p>2.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p> <p>제6조(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p> <p>2.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p> <p>3. 제5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의안번호</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699</td> <td style="width: 40%;">2000년 11월 일</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문화교육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p> <p>나. 회부일자 : 2000년 9월 21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122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2000. 10. 5 심사보류)</p> <p style="padding-left: 20px;">제12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2000. 11. 9 원안가결)</p> <p>2. 제안설명의요지</p> <p>(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최령)</p> <p>가. 제안이유</p> <p style="padding-left: 20px;">체육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발전</p>	의안번호	699	2000년 11월 일			문화교육위원회
의안번호	699	2000년 11월 일					
		문화교육위원회					